

추가약정서 (개인금융신용보험)

본인은 년 월 일자 주식회사케이뱅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대출 거래약정』(이하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하 "보증보험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조건부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제2조(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①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상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본인은 제1항의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신용보험 계약에 의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본인이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채권양도·양수의 승낙)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후의 채무변제) ①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게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

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②본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1. 채권보전, 이전 및 소송, 경매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2. 기타 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본인은 보증보험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 변제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약정한 채무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2항의 비용,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신용정보의 제공) 본인은 제2조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본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금융기관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관할법원) 보증보험사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개인고객부점(본점·본부·지점 등)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반환기준 등) ①보증보험사가 담보물의 처분 등에 따라 채권회수를 한 후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사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동 금원이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실제 반환할 때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한 후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반환한다. 다만 각 금원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에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회수를 한 후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는 회수금원에 대하여 채권회수일의 익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제1항에서 정한 기

